

서울특별시 강남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81
----------	-----

2022. 4. 14.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4. 1. 강남구청장

나. 상정의결

- 제30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2. 4. 14.)
“ 수정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 2021년 자치법규 일괄 정비 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의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및 자치법규 정비 요청 등에 따른 체계 정비, 한글 맞춤법 준수 및 외래어 순화에 따른 용어 정비, 조례 간 표현 통일 및 올바른 어순에 따른 문장 정비를 일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및 인용조항 정정
- 나. 수수료 등 감면규정의 통일적 정비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문구 정비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3조(자치법규의 정비)
 - ① 구청장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의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후 오랜 기간 동안 수정·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2.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구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구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경우
 4.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구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재검토·정비가 필요한 경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1. 8. 27. ~ 2021. 9.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 제외대상임.

5. 검토의견(전문위원 : 이문성)

1 조례안의 취지

- 조례안은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법령의 제명과 인용조문 변경사항 등을 적기에 반영하지 못한 조례를 일괄정비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주민의 자치법규 접근성과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제출되었음.

2 조례안의 일괄 개정 현황

- 지방자치의 발전과 자치분권의 가속화로 지방행정의 영역이 확산되고 있으며, 주민생활 속에서 자치법규가 차지하는 중요성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 강남구는 2022년 3월말 기준 288건¹⁾의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나,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후속입법 차원에서 조례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이를 적시에 모두 반영하기에는 입법기술적으로 한계가 있는 바, 이에 집행부는 일부 자치법규를 일괄정비²⁾ 형식으로 정비해 왔음.

3 조례안 일괄 개정 사항

- 조례안은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사항, 오기사항 등을 적기에 반영하지 못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2건의 조례를 일괄정비하고 있음.(참고자료 참조)

1) 강남구는 조례 288건, 규칙 112건, 훈령 41건, 예규 12건을 시행하고 있음.(2022. 3. 31. 기준)

2) 일괄정비는 관련성 있는 자치법규를 함께 개정하는 '입법기술'로 개별 자치법규를 일일이 개정하지 않고 일괄개정조례안을 만들어 본칙에서 손쉽게 개정하는 방법임. 일괄정비 방식에는 부칙에서 다른 조례들을 일괄 개정하는 방식과, 일괄개정입법 추진방식이 있음. 이중 부칙에서 개정하는 방식은 용어 등 경미한 사항의 정리 개정이 필요한 경우 사용되며, 일괄정비입법 추진방식은 부칙에 의한 다른 법령의 개정이 시간상 제약 등으로 인하여 곤란한 경우 또는 정책의 일괄실시를 위하여 관련조례의 일괄정비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되고 있음.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 를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로 하는 등 인용 조문 변경 등의 사항과 한자어의 순화, 소관부서 업무조정과 오기사항 등을 수정하였음.

<조례안 유형별 주요 예시 >

유 형	유형별 주요 예시	
조문 체계 (낫표, 약칭) 부적합, 오기, 한자어 순화	낫표 (「 」)	* 도로법 ⇒ 「도로법」, * 주민등록법 ⇒ 「주민등록법」 * 산업발전법 시행령 ⇒ 「산업발전법 시행령」
	약칭	*제9조의2제1항 ⇒ 법 제9조의2제1항
	오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한자어 순화	* ~관하여 ⇒ ~는, ~에 관하여 * 여타(餘他) ⇒ 그 밖의, * 요하는 ⇒ 긴급히 ~하여야 할 때 *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한 번만
법령 등의 제명 및 조항 부조화	제명	* 「철도건설법」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조항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6항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3제3항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5호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6호
행정기구 개편	명칭	* 기획재정국장 ⇒ 기획경제국장 * 복지문화국장 ⇒ 복지생활국장 * 공보실장 ⇒ 정책홍보실장
	주소	* 일원동 712-3 ⇒ 양재대로55길 14 * 율현동 278-1 ⇒ 방고개로 286

○ 일괄정비 방식의 조례 정비는 개별 자치법규의 본원적 내용에 대한 침해 없이 비교적 단순한 인용 조문 변경 등의 사항을 함께 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입법방식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의 자치법규 서비스 접근성과 이해도 증진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음.

- 이번 일괄개정 조례안은 관계법령이나 자치법규를 부적합하게 인용한 조문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법적 적합성과 주민의 자치법규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가 인정된다고 사료됨.
- 다만 관계 법규의 제·개정·폐지 이후 조례의 후속개정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인용 법조문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법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참고자료

〈일괄정비 조례안의 주요 내용〉

연번	자치법규명	주요정비내용	세부정비내용	소관부서	소관국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상위법 제·개정 사항 반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를 제2조제8호로 변경(안 제1조, 제3조)	복 지 정책과	복 지 생활 국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 경과하면 → 지나면 ○ 접수함에 있어 → 접수할 때	보 육 지원과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관련 조례 개정 사항 반영 나. 감면규정 정비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 제9조 나.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특수임무 유공자 및 유가족,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가족 신설 다. 한 차례에 한정하여 → 한 차례만		
4	서울특별시 강남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감면 규정 변경 및 신규 추가	○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를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으로 변경 (안 제9조제1항제4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 대상자와 그 가족' 추가 (안 제9조제1항제6호)	여 성 가족과	복 지 생활 국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명확한 표현으로 용어정비 나. 수수료 등 감면규정 변경 및 신규 추가	가. 제5조 재위탁을 재계약으로 용어를 명확화(안 제5조) 나. 국가유공자와 그 '직계가족 및 그 가족' 을 '유족 또는 가족'으로 변경 (안 제12조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와 그 가족' 추가 (안 제12조제6항)		
6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명확한 표현으로 용어정비 나. 사용료 등 감면규정 변경 및 신규 추가	가. 재위탁을 재계약으로 용어 명확화 (안 제8조제4항, 제10조제5항) 나.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변경 (안 제7조제2항제2호)		

연번	자 치 법 규 명	주 요 정 비 내 용	세 부 정 비 내 용	소관 부서	소관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추가(안 제7조제2항제3호)		
7	서울특별시 강남구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상위법 제·개정 사항 반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로 변경	청 소 행정과	복 지 생 활 국
8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소관부서 업무조정계획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기금운용심의회 간사 변경 (자원재활용팀장 → 지역청결팀장)		
9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가. 상위법 재·개정 사항 반영 (안 제5조, 제6조)	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8조제1항 → 제52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9조 → 제21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1조제1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1항	재 건 축 사 업 과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 기본 조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 강구 → 마련 ○ 조문 정비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가. 상위법을 구체화하여 위임조례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안 제3조, 제5조, 제9조, 제10조)	가. 「소음·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나. 학교인접지역 등에 위치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 학교인접지역 등에 위치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환 경 과	도 시 환 경 국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가. 상위법령의 조항 변경 반영 (안 제1조 및 제3조) 나. 상위법 재·개정 사항 반영(안 별 표)	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 → 제6조제3항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물환경보전법」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토론과정 중,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일부 조문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출됨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581호

발의일자 : 2022. 4. 14.

제안자 : 복지도시위원장

1. 수정이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수정하려는 것임.

2. 수정내용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적용(안 제6조의 개정조례 중 제10조제1항 및 안 제10조의 개정조례 중 제6조제3항, 제21조, 제25조제3항, 제28조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수 정 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의 개정조례 제10조제1항 중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를 “위원으로”로 한다.

안 제10조의 개정조례 제6조제3항 중 “환경오염을 저감하기”를 “환경오염을 줄이기”로, 제21조 중 “피해를 원활하게 구제하기”를 “피해 구제를”로, 제25조제3항 중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를 실시하여”를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하여”로, 제28조제1항 중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를 “위원으로”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 기본 조례의 일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안 제10조)

원 안	수 정 안	개 정 안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② (생 략) ③ 사업자는 사업활 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 이 사용되고 폐기됨 에 따라 발생하는 <u>환경오염의 저감을</u> 위하여 지속적인 연 구활동을 하고 필요 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 음) ③ ----- ----- ----- ----- ----- ----- <u>환경오염을 저감하</u> <u>기</u> ----- ----- ----- ----- -----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② (개정안과 같음) ③ ----- ----- ----- ----- ----- ----- <u>환경오염을 줄이기</u> ----- ----- ----- ----- ----- ----- ④ (개정안과 같음)
제21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구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 정하게 해결함과 동 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u>피해의 원활한</u> <u>구제를</u>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제21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 ----- ----- ----- ----- ----- ----- -- <u>피해를 원활하게</u> <u>구제하기</u> ----- ----- -----	제21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 ----- ----- ----- ----- ----- ----- -- <u>피해 구제를</u> -- ----- -----

<p>제25조(환경실태조사) ①·② (생략)</p> <p>③ 구는 환경보전시 책을 실행하기 위하 여 환경보전에 관한 <u>정보의 수집과 조사</u> <u>를 실시하고</u> 그 성 과의 보급에 노력하 여야 한다.</p> <p>제28조(구성) ① 위원 회는 위원장과 부위 원장 각각 1명을 포 함하여 40명 이내의 <u>위원으로</u> 구성한다.</p> <p>②·③ (생략)</p>	<p>제25조(환경실태조사) ①·② (현행과 같 음)</p> <p>③ ----- ----- ----- <u>정보를 수집하고 조</u> <u>사를 실시하여</u> --- ----- -----.</p> <p>제28조(구성) ① ---- ----- ----- <u>위원으로</u> <u>성별을 고려하여</u> -- -----.</p> <p>②·③ (현행과 같 음)</p>	<p>제25조(환경실태조사) ①·② (개정안과 같음)</p> <p>③ ----- ----- ----- <u>정보를 수집하고 조</u> <u>사하여</u> ----- ----- -----.</p> <p>제28조(구성) ① ---- ----- ----- <u>위원으로</u> - ----- -----.</p> <p>②·③ (개정안과 같음)</p>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서울특별시 강남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를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3조 중 “제2조제6호”를 “제2조제8호”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적용함에 있어”를 “적용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녀 순위 결정 대상”을 “자녀 순위를 결정하는 대상”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경과하면”을 “지나면”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접수함에 있어”를 “접수할 때”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비치하고”를 “갖추어 놓고”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2조 중 “저출산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를 “저출산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기여한”을 “이바지한”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여”를 “이바지”로 한다.

제4조제2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7조에 근거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을 준용하여 규칙으로 정한다”를 “제9조에 따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하되”를 “하며”로, “1회에 한하여 재위탁”을 “한 차례만 재계약”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한 차례에 한정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후단 중 “교부”를 “지급”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회관의”를 “관장은 회관의”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3호 중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그 유족 또는 가

족”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제19조제1호 중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강남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를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를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를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를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

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5. 「장애인복지법」 제2조”를 “5. 「장애인복지법」 제2조”로 한다.
제9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제5조(「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을 “하며, 한 차례만 재계약”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재위탁”을 각각 “재계약”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직계가족 및 그”를 “유족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제13조제5호 중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국가유공자 또는 그”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제8조제4항 전단 중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을 “한 차례만 재계약”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재위탁”을 “재계약”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단서 중 “재위탁”을 “재계약”으로, “재 위탁”을 “재계약”으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강남구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4항 중 “자원재활용팀장”을 “지역청결팀장”으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조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을 “이 조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으로 한다.

제2조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2호”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8조제1항”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52조제1항”으로, “제29조”를 “제21조”로, 같은 조 제4호 중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제5조의3제1항”에서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제5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4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 비용”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 비용”으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 및 제54조에 따라”를 “조

례는”으로 한다.

제4조제6호 중 “기여하는”을 “이바지하는”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를”을 “구가 수립한 환경보전계획을”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환경오염의 저감을”을 “환경오염을 줄이기”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환경정보에 대하여”를 “환경정보를”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이를”을 “구청장이 수립한 환경계획을”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14조 중 “강구하게”를 “마련하게”로 한다.

제15조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을 “사업활동에서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으로, “강구”를 “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의 실시”에 있어”를 “사업을 실시할 때”로,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을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한”으로,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21조 중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을 “피해 구제를”로 한다.

제23조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정보의 수집과 조사를 실시하고”를 “정보를 수집하

고 조사하여”로 한다.

제28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28조의2 및 제29조를 각각 제29조 및 제33조로 한다.

제29조(중전의 제28조의2) 제3항 중 “등에 관하여”를 “등에”로 한다.

제30조 본문 중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를 “하며,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31조, 제33조의2 및 제34조를 각각 제34조, 제31조 및 제32조로 한다.

제34조(중전의 제31조)제2항 중 “1회”를 “한 번만”으로 한다.

제32조(중전의 제34조)제4호 중 “위원이 제33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데”를 “위원에게 제31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으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37조 중 “청취하거나”를 “듣거나”로 한다.

제39조(중전의 제38조) 중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음·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을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로 한다.

제3조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학교인접지역 등에 위치한 공사장에 대해서는”을 “학교인접지역 등에 위치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을 “피해 예상지점”으로 한다.

제9조에서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를 “각 호의 사항을”로 한다.

제10조에서 “구청장은 사업장”을 “구청장은 사업자가 사업장”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사업자가”를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강남구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 따라”를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서 위임된”으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6조제2항에 따른”을 “법 제6조제3항에서 위임된”으로 한다.

별표 허가기준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2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 (안 제2조)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지원기준) ① · ② (생략)</p> <p>③ 제2항의 기준을 <u>적용함에 있어</u> 대상 아이가 신청일 현재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기 전일 경우에는 기재된 것으로 간주한다.</p> <p>④ 대상아이의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사망자녀 또는 입양자녀도 <u>자녀 순위 결정 대상에 포함한다.</u></p> <p>⑤ · ⑥ (생략)</p> <p>제5조(지원대상자) ① (생략)</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가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u>경과하면</u> 지원 대상이 된다.</p> <p>제6조(지원신청) ① (생략)</p>	<p>제4조(지원기준)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적용할 때</u> ----- ----- -----.</p> <p>④ ----- ----- ----- <u>자녀 순위를 결정하는 대상</u>-----.</p> <p>⑤ · ⑥ (현행과 같음)</p> <p>제5조(지원대상자)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u>지나면</u> ----- --.</p> <p>제6조(지원신청) ① (현행과 같음)</p>

②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함에 있어 신청자에게 제4조의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 관한 사항, 제8조의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 등 관리) ① 동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양육지원금 신청 대장을, 구청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출산양육지원 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0조(그 밖의 지원) ① 구청장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다자녀 가족 자녀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구청장은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정착을 위하여 저출산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① 구청장은 가족친

② -----
----- 접수할 때 -----

-----.

제9조(대장 등 관리) ① -----

----- 갖추어 놓고 -----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그 밖의 지원) ① -----

----- 필요한 -----
-----.

제12조(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
----- 저출산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

제13조(포상) ① -----

화 기업문화 조성 및 확산과 저출산 대책 활동 촉진,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할 수 있다.

1.·2. (생략)

3. 그 밖에 저출산 대책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

② (생략)

-----.

1.·2. (현행과 같음)

3. ----- 이바
지한 -----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 (안 제3조)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2. (생 략)</p> <p>3. “체험시설”이란 영유아 및 어린이의 창의력 증진과 정서·신체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놀이와 체험을 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2. (현행과 같음)</p> <p>3. ----- ----- ----- <u>이바지</u> ----- ----- ----- -----.</p>
<p>제4조(시설 및 기능) ① (생 략)</p> <p>② 회관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p> <p>1. ~ 4. (생 략)</p> <p>5. <u>기타</u>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4조(시설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p> <p>② 회관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그</u> <u>밖</u>에 ----- -----</p>
<p>제6조(운영 등) ① (생 략)</p> <p>② 위탁의 경우 위탁체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p>	<p>제6조(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고자 하는 자는 이용신청을 통해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원제를 도입하고 회원 가입 시에는 회원증을 발급한다.

제16조(사용료 등) 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17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생략)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 2. (생략)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신 설>

----- 사람은 -----
----- .

② 관장은 회관의 -----

-----.

제16조(사용료 등) ① -----
---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
----- 사람
은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2. (현행과 같음)

3. -----

----- 그 유족 또는 가족

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신 설>

<신 설>

4. ~ 6. (생 략)

제19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회관에서 운영하
는 프로그램의 이용을 제한하
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
다.

1. 수강증 또는 이용권을 타인
에게 전대 또는 대여한 경우
2. (생 략)

다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
족 또는 가족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7. ~ 9. (현행 제4호부터 제6
호까지와 같음)

제19조(이용의 제한) -----

--.

1. ----- 다른 사
람-----
2.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신 · 구조문대비표 (안 제4조)

현 행	개 정 안
제9조(비용의 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비용을 면제할 수 있 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 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 른 국가유공자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 른 장애인 및 그 자녀 <신 설> ② (생 략)	제9조(비용의 면제) ① ----- -----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장애인복지법」 제2조 ----- 6.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 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 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와 그 가족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

신 · 구조문대비표 (안 제5조)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위탁운영기간) 제4조에 따라 수탁자에 위탁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재위탁 심사 후 기준 점수 미달인 경우 공개 경쟁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p>	<p>제5조(위탁운영기간) ----- ----- ----- 하며, 한 차례만 재계약-----. ----- 재계약 ----- ----. --- 재계약 ----- ----- -----.</p>
<p>제12조(수강료 등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업교육의 수강료, 보육실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직계가족 및 그 가족 3. ~ 5. (생략) <p><신 설></p>	<p>제12조(수강료 등 감면) ① ----- ----- ----- -----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 ----- ----- 유족 또는 ----- ----- 3. ~ 5. (현행과 같음) 6.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 (안 제6조)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사용료 등) ① (생략)</p> <p>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u>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u></p> <p><u><신 설></u></p> <p>3. ~ 7. (생략)</p> <p>③ ~ ⑦ (생략)</p> <p>제8조(운영의 위탁) ① ~ ③ (생략)</p> <p>④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u>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u>할 수 있다. 이 경우, <u>재위탁</u> 기간은 3</p>	<p>제7조(사용료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p> <p>----- <u>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u> -----</p> <p>3.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u>예우대상자와 그 가족</u></p> <p>4. ~ 8. (현행 제3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p> <p>③ ~ ⑦ (현행과 같음)</p> <p>제8조(운영의 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u>한 차례만 재계약</u>-----</p> <p>-. ----- <u>재계약</u> -----</p>

**서울특별시 강남구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 (안 제7조)**

현 행	개 정 안
<p>제3조(분뇨처리 기본계획) ① (생략)</p> <p>② 구청장은 법 제5제1항에 따라 <u>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이 분뇨처리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해당 관할 구역의 분뇨 발생 및 처리 등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p>	<p>제3조(분뇨처리 기본계획)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서울특별시장</u>----- ----- ----- ----- ----- ----- -----.</p>
<p>제16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u>수급권자</u>가 납부 의무를 지는 경우</p> <p>2. 3. (생략)</p>	<p>제16조(수수료의 감면) ----- ----- ----- -----.</p> <p>1. ----- <u>제7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u>----- -----</p> <p>2. 3.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의

일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 (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3조의2(기금운용심의회) ① ~ ③ (생략)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u>자</u> <u>원재활용팀장</u> 이 된다. ⑤ ~ ⑧ (생략)	제3조의2(기금운용심의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지</u> <u>역청결팀장</u> -----. ⑤ ~ ⑧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일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 (안 제9조)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u>이 조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u>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귀속·지원되는 재건축부담금의 관리·운용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비사업”이란 <u>「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2호</u>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5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2. (생략)</p> <p>3. <u>「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8조제1항 및 제2항</u>, 같은 조례 시행규칙 <u>제29조</u>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지원금 및 보조금</p> <p>4. <u>「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제5조의3제1항</u>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및 융자금</p> <p>5. (생략)</p>	<p>제1조(목적) <u>이 조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u> 등----- ----- -----.</p> <p>제2조(정의) ----- ----- <u>「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2호</u>----- -----.</p> <p>제5조(세입)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2조제1항</u>----- <u>제21조</u>----- ---</p> <p>4. <u>「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제5조의3제1항</u>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및 융자금</p> <p>5. (현행과 같음)</p>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 비용

제6조(세출) -----
-----.

1. ~ 3. (현행과 같음)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
진단비용

7. (생략)

제5조(구의 책무) 구는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 8. (생략)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② (생략)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7조(구민의 권리) ① (생략)

② 모든 구민은 구의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10조(환경보전계획) ① ~ ④ (생략)

7. (현행과 같음)

제5조(구의 책무) -----

---- 구가 수립한 환경보전계획을 -----.

1. ~ 8. (현행과 같음)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환경오염을 줄이기 -----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구민의 권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환경정보를 -----
-----.

제10조(환경보전계획)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구청장은 환경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자연환경의 보전) ①·② (생략)

③ 구는 공원,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환경영향 검토) 구청장은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지역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구는 폐기물 및 하수 관련 시설, 대기오염 방지시설 등 공공환경 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구는 환경오염 방지를

⑤ -----
-- 구청장이 수립한 환경계획
을 -----.

제11조(자연환경의 보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마련-----.

제14조(환경영향 검토) -----

----- 마련하게 -----.

제15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

----- 마련-----.

제16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

위해 국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 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그 밖의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1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구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국민참여) 구는 환경보전 시책의 수립, 집행 및 환경오염 감시 활동 등에 국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 사업 활동에서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 마련 -----.

② ----- 사업을 실시할 때 ----- 마련-----.

제17조(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한 ----- 필요한 ----- 마련-----.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 피해 구제를 -----.

제23조(국민참여) -----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환경실태조사) ①·② (생략)

③ 구는 환경보전시책을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조사를 실시하고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③ (생략)

④ 삭제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환경과장으로 한다.

제28조의2(분과위원회) ①·② (생략)

③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제29조 (생략)

제30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

마련-----.

제25조(환경실태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정보
를 수집하고 조사하여 -----
-----.

제28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삭제>

제29조(분과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등에 -----
-----.

제33조 (현행 제29조와 같음)

제30조(임기) -----

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1조(회의) ① (생략)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④ (생략)

제33조의2 (생략)

제3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위원이 제33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신설>

----- 하며, 한 차례만 -----
----- . -----

-----.

제34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한 번만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31조 (현행 제33조의2와 같음)

제32조(위원의 해촉) -----

-----.

1. ~ 3. (현행과 같음)
4. 위원에게 제31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

제3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업무담당 과장으

제37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 또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위원회 위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자문과 관련하여 환경계획 등의 조사·연구·용역을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9조 (생략)

로 한다.

제37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

----- 듣거나 -----
-----.

제39조(재정지원) -----

----- 드는 -----
-----.

제38조 (현행 제39조와 같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 (안 제11조)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소음·진동관리법</u>」, 「<u>대기환경보전법</u>」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소음·진동관리법</u>」 제21조, 「<u>대기환경보전법</u>」 제43조----- ----- ----- ----- ----- ----- ----- ----- ----- ----- -----.</p>
<p>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u>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u>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제3조(구청장의 책무) ----- ----- ----- ----- ----- ----- ----- <u>다음 각 호의 사항에</u>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5조(생활소음·진동의 측정) ① 구청장은 주택밀집지역, <u>학교인접지역</u> 등에 위치한 공사장에</p>	<p>제5조(생활소음·진동의 측정) ① ----- <u>학교인접지역</u> 등에 위치한 공사장에서</p>

대해서는 생활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사전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생활소음·진동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② (생략)

제9조(지도·점검) 구청장은 구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10조(사업자의 자율참여) 구청장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사업자가 관리 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발생하는-----

----- 피해 예상지점-----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지도·점검) -----

----- 각 호의 사항

을 -----

1. ~ 3.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업자의 자율참여) 구청

장은 사업자가 사업장-----

----- 생활소음·진동 및 비

산먼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 (안 제12조)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u>」 제6조제2항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세부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p> <p>[별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사업종류</th> <th style="width: 80%; text-align: center;">허 가 기 준</th> <th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공통사항</td> <td>「학교보건법」, 「소방기본법」, 「건축법」, 「주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 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td> <td></td> </tr> </tbody> </table>	사업종류	허 가 기 준	비 고	공통사항	「학교보건법」, 「소방기본법」, 「건축법」, 「주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 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p>제1조(목적) -- 조례는 「<u>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u>」 제6조제3항에서 위임된 ----- ----- -----.</p> <p>제3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3항에서 위임된 ----- -----.</p> <p>[별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사업종류</th> <th style="width: 80%; text-align: center;">허 가 기 준</th> <th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공통사항</td> <td>----- ----- ----- ----- ---- 「<u>물환경보전법</u>」 ---- ----- -----.</td> <td></td> </tr> </tbody> </table>	사업종류	허 가 기 준	비 고	공통사항	----- ----- ----- ----- ---- 「 <u>물환경보전법</u> 」 ---- ----- -----.	
사업종류	허 가 기 준	비 고											
공통사항	「학교보건법」, 「소방기본법」, 「건축법」, 「주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 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사업종류	허 가 기 준	비 고											
공통사항	----- ----- ----- ----- ---- 「 <u>물환경보전법</u> 」 ---- ----- -----.												